

# 신수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0. 10. 27.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10. 12.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20. 10. 13.
- 다. 상정일자 :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20. 10. 27.)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주택과장

### 1) 제안이유

신수2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0조제1항 제2호다목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 2) 주요내용

#### (1) 구역현황

- 위 치 : 마포구 신수동 255번지 일대
- 면 적 : 17,264.5m<sup>2</sup>
- 추진경위
  - 2006.03.23.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고시
  - 2007.03.12. : 추진위원회 승인
  - 2010.06.03. : 정비구역지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 2010-209호)
  - 2016.06.10. :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청(토지등소유자 → 구)

- 2017.04.25. :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 실시
  - 실시결과 : 직권해제 찬성 31.6%, 직권해제 반대 51.3%, 기권 등 17.1%
- 2020.02.21. : 일몰기한 연장 요청(구 → 시)
- 2020.04.01. : 일몰기한 연장 관련 市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 개최결과 : 재자문(소유자 의견 분포도면 및 미동의자의 비율 및 대지지분 파악)
- 2020.05.26. : 일몰기한 연장 관련 주민의견조사 실시 및 연장 재요청(구→ 시)
  - 찬·반 분포비율
 

┌ 토지등소유자 : 연장찬성 50.8%, 연장반대 43.2%, 무응답 6.0%	└ 대 지 지 분 : 연장찬성 46.4%, 연장반대 49.0%, 무응답 4.6%
---	--
- 2020.06.30. : 市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회신 - 일몰기한 연장 부동의
- 2020.08.06. : 구역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마포구 공고 제 2020-891호)
  - 공람결과 : 찬성(해제)의견 50명, 반대(존치)의견 65명

## (2) 신수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

### 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구 분	구 역 번 호	동 명	지 번	구 역 면 적	계 획 용 적 률	건 폐 율	층 수	비 고
기 정	12	신수동	255-7	1.7 ha	190%	60%	7층	
변 경	해 제							

### 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구역명	구역면적(㎡)	택지면적(㎡)	정비기반시설(㎡)			건축계획
			공원	도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신수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7,264.5	14,144.0	942.5	1,862.9	315.1	- 234세대 - 용적율: 239.46% - 평균층수 18층

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역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7,264.5	-	17,264.5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1,043.4	증)16,221.1	17,264.5	10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16,221.1	감)16,221.1	-	-	

라) 정비계획

- 토지이용계획

결정구분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합계		17,264.5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3,120.5	18.0	
		도로	1,862.9	10.8	
		소공원	942.5	5.4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315.1	1.8	
		택지 (획지)	소계	14,144.0	82.0
		획지1	11,785.1	68.3	공동주택 및 부대복지시설
		획지2	2,358.9	13.7	종교용지
	변경	합계		17,264.5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3,120.5	18.0	
		도로	1,862.9	10.8	기존 기반시설로 환원
		소공원	942.5	5.4	해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315.1	1.8	해제
		택지 (획지)	소계	14,144.0	82.0
		획지1	11,785.1	68.3	해제
		획지2	2,358.9	13.7	해제

-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A-4	공원	소공원	신수동 255번지 일원	942.5	
변경	해 제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380	20~23	집산 도로	1,900 (38.8)	신수초교앞	합정동 359-1	일반 도로	97.3.13 (서고97-62)	
변경	중로	1	380	20	집산 도로	1,900	신수초교앞	합정동 359-1	일반 도로	97.3.13 (서고97-62)	
기정	소로	2	39	8~13	국지 도로	380 (185.8)	신수동 182-12	신수동 431-3	일반 도로	64.1.24 (건고 제768호)	지번 변경
변경	소로	2	39	8	국지 도로	380	신수동 182-12	신수동 431-3	일반 도로	64.1.24 (건고 제768호)	
기정	소로	3	79	6~10	국지 도로	260 (115.6)	신수동 350-1	신수동 255	일반 도로	64.1.24 (건고 제768호)	
변경	소로	3	79	6~8	국지 도로	260	신수동 350-1	신수동 255	일반 도로	64.1.24 (건고 제768호)	
기정	소로	1	10	10	국지 도로	200	신수동 448-4	신수동 311	일반 도로	78.5.26 (서고 제242호)	
변경	소로	3	80	6	국지 도로	200	신수동 448-4	신수동 311	일반 도로	78.5.26 (서고 제242호)	

※ ( )내용은 본 “신수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내에 관계되는 도로에 대한 내용임.

(다)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A-3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신수동 279번지 일원	315.1	
변경	해제					

-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등)					비고
	명 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신수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7,264.5	마포구 신수동 255-7번지 일대	81	-	-	81	-	
변경	해 제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층) / 높이(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신규	신수2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17,264.5	A-1	11,785.1	마포구 신수동 255-7번지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30% 이하	240% 이하	최고 18층이하 (평균 18층이하) / 56m 이하								
				A-2	2,358.9	마포구 신수동 286-1번지 일대	종교시설	60% 이하	200% 이하	12층 이하								
				A-3	315.1	마포구 신수동 279번지 일대	어린이집	60% 이하	200% 이하	12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p style="text-align: center;">○ 주택 공급계획(세대수)</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구 분</th> <th>합 계</th> </tr> </thead> <tbody> <tr> <td>합 계</td> <td>234세대 (100.0%)</td> </tr> <tr> <td>전용면적 85㎡이하</td> <td>182세대 (77.8%)</td> </tr> <tr> <td>전용면적 85㎡초과</td> <td>52세대 (22.2%)</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68.8%</p>								구 분	합 계	합 계	234세대 (100.0%)	전용면적 85㎡이하	182세대 (77.8%)	전용면적 85㎡초과	52세대 (22.2%)
	구 분	합 계																
합 계	234세대 (100.0%)																	
전용면적 85㎡이하	182세대 (77.8%)																	
전용면적 85㎡초과	52세대 (22.2%)																	
심의를 통해 완화 받은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 기부채납에 의한 높이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균층수 완화 : 12층 → 평균18층</li> <li>- 도로사선제한 완화</li> <li>· 완화높이 : <math>1.5D \times (1 + \text{제공면적}/\text{당초면적})</math></li> <li>(D :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li> <li>· <math>1.5D \times (1 + 2,605.4 / 17,264.5) = 1.7 D</math></li> </ul>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p style="text-align: center;">○ 도 로 변 : 건축한계선 3m지정</p> <p style="text-align: center;">○ 인접대지 : 건축한계선 6m지정</p>																
2010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 기존 보행동선(현황도로)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공보행통로 선형결정</p> <p style="text-align: center;">○ 인공지반이 형성되지 않고 주변경계와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조정</p>																
변 경			해 제															

(3) 주민 공람공고 결과

- 근 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항
- 게재구분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
- 공고기간 : 2020. 8. 6. ~ 2020. 9. 17.
- 공람의견 : 찬성(해제) 의견 50명, 반대(존치) 의견 65명

(4) 구역해제 사유

- 신수2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규정

에 의하여 2020년 3월 2일 전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일몰제 적용을 받아 정비구역 해제절차 추진대상임

- 일몰기한 연장 신청 관련 市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일몰기한을 연장하  
는 경우에도 향후 사업추진 가능성이 낮고, 서울의 주택유형으로 볼 때 단독주  
택지가 상존하는 것도 필요한 바, 연장신청 부동의 처리되어 정비구역 해제  
추진

### (5) 향후 추진절차

- 주민 공람공고 의견 및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제출(구→시)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정비구역 해제여부 결정 및 고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  
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지  
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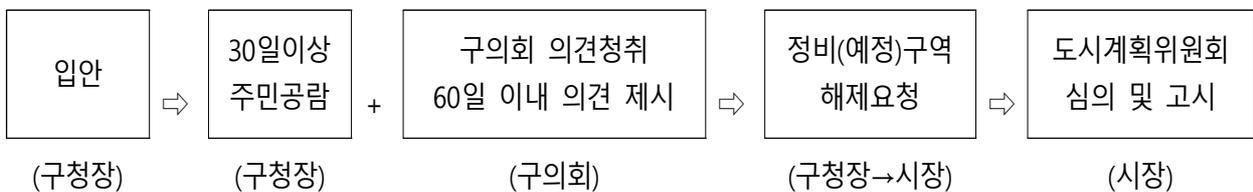
## 3. 검토의견(신준호 전문위원)

### 1) 조례 제정 배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  
우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  
해야 하고,
- 일몰기한 연장 신청 결과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향후 사업추진  
가능성이 낮고, 서울의 주택유형으로 볼 때 단독주택지가 상존하는 것도  
필요한 바, 부동의 처리되어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하고자 제출됨.

## 2) 종합 의견

- 신수동 25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07년 3월 12일 추진위원회 승인이후 2010년 6월3일 정비구역지정이 고시되었으나, 구역 지정 이후 약 10년이 경과됨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 동의율이 확보되지 않았음.
-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사유에 해당됨.



<표 1. 정비구역 해제 절차>

- 아울러, 일반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을 “반대” 하고 집합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는 “찬성” 비율이 높음에 따라 양측 의견이 첨예한 상황으로 일몰기한 연장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반대측 토지등소유자의 재산상 피해와 추진위원회 임기 만료의 사유를 이유로 일몰기한의 연장을 부동의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향후 부서에서는 대상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정비구역지정 전으로 환원됨을 인지하여 지역의 낙후성이 회복될 수 있는 필지별 사업추진의 새로운 도시개발모델을 대안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채택**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